

농신보 보증제도 변경,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입실군 관내 부부 농민이 새로 바뀐 농신보 보증제도로 인해 연체자로 전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부부는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의 명의로 각각 5천만원씩 농신보에서 보증을 받아 총 1억원의 농업종합자금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올해 3월 중순에 발생했다. 이들 부부가 빌린 농업종합자금의 상황이 다가왔다. 그래서 해당 자금을 대해 대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이는 3월 2일부터 바뀐 농신보 보증제도 때문이었다.
- 새로운 농신보 보증제도에 의하면, 이들 부부의 보증한도는 개개인으로 따지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의 보증한도는 총 3천만원으로 제한되었고, 나머지 7천만원은 부동산 등 담보물이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물론 이들 부부는 담보물이나 연대보증인을 제시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연체자로 전락하였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올해 3월 2일부터 농신보 보증제도가 변경·시행되면서 일선 농민들이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중 하나였던 상호금융대체저리지금의 상환시기가 2006년부터 한꺼번에 돌아오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새로 개편된 농신보 보증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한농연 회원과 일선 농민들은 농협 창구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월간 한농연?? 5월호에서는, 변경된 농신보 보증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농연의 개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농신보 보증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2001년 이후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농신보의 대위변제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최근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급감하고 있으며 신규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여력도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정부가 2004년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대비하여 농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 규모를 확대했으나, 농가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위변제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 이를 따라가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위변제 발생 감소 등을 통해 농신보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정부는 올해 3월 2일부터 농신보 보증제도를 변경·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부분보증 확대

기존	개정('05.3.2부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보증 비율 동등 적용 - 관리기관 90%, 금융기관 10% • 부분보증 제외 - 3천만원 이하 농어업인 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보증 비율 차등 적용 - 농어업인(관리/금융) : 90/10 - 영농조합법인 : 85/15 - 그 외의 자 : 80/20 • 부분보증 제외 - 1천만원 이하 농어업인 대출금 	* 신규 보증에 한함

(2) 우선보증 순서 규정

기존	개정('05.3.2부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 총한도 부족시 농어업인의 자금, 정책자금 순으로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한도 부족시 다음 순으로 보증 ① 농어업인(정책자금 → 일반자금) ②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정책자금 → 일반자금) ③ 기타 유통 · 가공 · 업자 등(정책자금 → 일반자금) 	* 신규 보증에 한함 현재는 법인의 정책자금까지 만신규보증

(3) 위탁보증 한도 축소

기존	개정('05.3.2부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당 보증누계금액 5천만원 이하인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은 지역농협 등에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당 보증누계금액 3천만원 이하인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은 지역농협 등에서 처리 	

(4) 선도농업인 우대보증 지원기준 변경

기존	개정('05.3.2부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대상자금 : 1억원 - 선도농업인의 소요자금(일반 · 정책자금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대상자금 : 1억원 - 선도농업인의 소요자금 중 정책자금 	* 신규 보증에 한함

(5) 보증지원심사 강화

기존	개정('05.3.2부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신설> •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 연체자, 신용불량자, 특수채권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간 공동경영에 관한 기준 규정 - 공동경영하는 가족의 보증한도는 합산 • 보증심사시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경영인 가족소유의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시 부정정으로 판정 •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취급주의 대상자 추가 	

농신보 보증제도 변경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3월 2일 새로 변경된 농신보 보증제도는 농민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농신보의 지급보증서를 받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임실군 부부 농민의 사례와 같이,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합산하도록 바뀌었다. 전에는 개개인에 대해서 농신보 보증한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신규자금 대출이 수월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채무를 대환하거나 신규대출을 받아야 할 농민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결국 최악의 경우 임실군 부부 농민과 같이 연체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한농연 회원과 같이 젊고 대규모로 경영하는 선도농업인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되는 우대보증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전에는 일반자금(상호금융)을 포함한 전체 자금이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정책자금에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이 때문에 신규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한농연 회원들은 농업종합자금과 같은 정책자금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농민들이 농신보 보증을 통해 3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각 지역의 농신보 보증센터에 신용평가 서류와 보증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전에는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대해서만 적용되었지

만, 3월 2일 이후 제도가 변경되어 농민들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농신보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부분보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이다. 새로 바뀌는 부분보증제도에 의하면 농업인(농민)에 대해서는 농신보가 90%, 회원조합이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출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회원조합이 보증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회원조합은 대출금이 부실화 되면 농신보를 통해 90%밖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신규 투자 등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농민들의 대출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이번 농신보 제도의 개편이 농업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현장 농민들의 지적도 많다. 한정된 보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농신보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농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농림부는 3월 2일 농신보 제도 변경 지침을 농업 등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고 나서는 정작 3월 24일이 되어야 홈페이지에 발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모르던 농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 농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정책을 변경하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정책 내용을 홍보

해야 했지만, 정부는 그렇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신보 문제는 단순히 농신보 기금의 건전한 운영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농신보의 보증이 있었기에 농민들은 1990년대 말 심각했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부채 경감대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담보물과 연대보증을 내세울 수 없는 대다수 힘 없는 농민들에게, 농신보 보증은 마지막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농신보 제도의 변경 때문에 향후 많은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우려가 높다.

농신보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무엇보다도 농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더욱 늘려야 한다. 적어도 매년 대위변제금의 100% 수준은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신보의 기본재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농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도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신보 정부출연금은 이를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다. 특히 2003년에는 농신보의 법정 운용한도가 20배를 초과하여 1,761억원의 구상채권상각비를 2004년으로 이월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급기야 3월 2일, 정부는 농신보의 신규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정부가 농신보 문제에 대한 시각을 올바르게 잡고 정부출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농신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둘째, 농민에게 원활히 농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농신보 보증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신규보증에 대한 부분보증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 자연인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3천만원 이하의 자금에 대하여 농신보를 통해 전액 보증해야 한다. 또한 한농연 회원

등 선도농업인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은 일반자금과 정책자금 구분 없이 최고 1억원 한도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간 공동경영에 대하여, 가족 전체에 대한 보증한도를 설정하지 말고 개별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인당 보증누계금액 5천만원 이하인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은 회원조합 등 일선 금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농신보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 농신보 정부출연금 비중을 대위변제 대비 100% 이상으로 조정, 기본재산을 확충

-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도구가 농신보 제도이므로,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2년 이전과 같이 농신보 정부출연금 비중을 대위변제 대비 100% 이상으로 확보하여,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농신보의 보증 기능을 조기에 회복

○ 원활한 농가 자금 지원을 위한 농신보 보증제도 개선 요구사항

- 신규보증에 대한 부분보증 비율 조정
 - 농어업인(자연인) : 3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농신보를 통해 전액 보증
 - 영농조합법인 : 농신보 90% / 금융기관 10%
 - 그 외의 자 : 농신보 70% / 금융기관 30%
- 위탁보증 한도 : 동일인당 보증누계금액 5천만원 이하인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은 회원조합 등 일선 금융기관에서 처리
- 선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등) 우대보증 지원 기준 : 선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소요자금 전체(일반, 정책자금 구분 없이)에 대해 최고 1억원 한도로 조정
- 가족간 공동경영시 개별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설정